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540

2015년 6월 23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7일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5년 6월 23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학진 물순환기획관)

가. 제안이유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을 개선하여 총질소, 총인을 처리하게 됨에 따라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 시 적용하는 항목을 현행 2항목에서 4항목으로 늘리고 기타 부적절한 문장을 수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별표 3]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개정

○ 수질하수도사용료 징수 대상항목에 총질소, 총인을 추가하고 사용료 산정기준에 총질소, 총인의 적용방법 추가

- 법령에 의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반입이 가능한 음폐수, 침출수 등에 적용할 오염부하량 산정기준 마련
- 기타 표기상 오류 정정

3.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시 물재생센터 내 공공하수처리에 대한 고도처리시설의 성능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총질소 및 총인 처리가 가능해져 수질하수도사용료 징수 대상항목 및 산정기준에 총질소 (T-N), 총인(T-P)을 추가하는 한편, 공공하수처리시설 내로 반입되는 음폐수·침출수 등에 관한 오염부하량 산정기준을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조문별 의견

- 1)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 대상항목에 총질소, 총인 추가 관련 (안 별표 3)
 - 현행 「하수도법」제65조제1항1)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 항2)은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 징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하수의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일반 하수도사용료와 달리 수질 하수도사용료는 폐수배출시설이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폐수나 처리장 내로 반입되는 음폐수·침출수 등 즉, '하수의 질'을 기준

^{1) 「}하수도법」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하수도법 시행령」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 으로 부과하는 요금형태로 현행 조례 제23조제3항³⁾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여기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폐수의 농도와 「수질 및 수질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4)제1항의 폐수 배출허용기준 농도([표 1]참조) 또는 같은 조 제8항의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와의 차이로 오염부하량을 산정하여 수질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 반면에 처리장 내로 반입되는 음폐수·침출수 등은 시장이 고시한 설계유입수질과의 농도 차이로 오염부하량을 산정하여 처리비를 징수하고 있음.

[표 1] 항목별 폐수 배출허용기준(시행령 별표 13)

대상 규모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폐수배출량 2 천세제곱미터 미만		
항목 지역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부유 물질량 (mg/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화학적 산소요구 량 (mg/L)	부유 물질량 (mg/L)
청정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가지역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나지역 (서울)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특례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³⁾ 조례 제23조 ③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별표 2에 의한 하수도 사용요금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⁴⁾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페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본 개정안은 이 같은 수질하수도사용료의 구체적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별표 3]에 수질하수도사용료 부과 대상 항목으로 기존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5)이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6), 그리고 부유물질 농도(SS)7)와 함께 총질소(T-N)8)와 총인(T-P)9)을 새로이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12년 시행)에 따라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고도처리시설 완료 등 시설개량이 이루어지면서 총인 및 총질소에 대한 처리가 가능10)해짐에따라 이를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 항목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이나, [표 2]에 보듯이 2013년 4월에 난지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이 준공된 점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다 하겠음.

⁵⁾ 생물학적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은 물의 유기오염지표의 한가지로서 어떤 물속의 미생물이 산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유기물을 분해. 안정시키는데 요구되는 산소량이다.

⁶⁾ **화학적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은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 분 해시켜 정화하는 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ppm(part per million 백만분율)또는 mg/ℓ로 나타낸 것이다.

⁷⁾ 부유물질(Suspended Solids)농도는 오염된 물의 수질을 표시하는 지표로서, 현탁고형물(懸濁固形物)이라고도 한다. 도시 폐수·공장 폐수 중에는 유기질 및 무기질의 고형물이 현탁상태로 포함되어 있다. mg/L 또는 ppm으로 나타낸다.

⁸⁾ **총질소(Total Nitrogen)**는 무기성 질소 및 유기성 질소의 질소량의 합계를 말한다. 전자는 암모나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등을 가리킨다. 후자는 단백질, 요소, 아미노산 등을 가리킨다.

⁹⁾ **총인(Total Phosphorus)**는 하천, 호소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말한다. 전(全)인이라고도 한다.

¹⁰⁾ 총인은 현재 응집약품 투입을 통해 처리 중이고 2019년까지 총인 처리시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기간동안 강화된 기준 적용은 유예 받은 상태임.

[표 2]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현황

구분	현 황
난지	`13.4월(MLE 86만m³/일 준공)
탄천	`13.5월(MLE 90만m³/일 준공)
중랑	r `07.10월(A2O, 46만㎡/일), - `14.4월(MLE #3처리장 78만㎡/일 준공)
서남	`14.4월(MLE 115만㎡/일 준공)

한편, 개정사항과 별개로 [별표3]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보면 내용이 모호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수질하수도 사용료 징수 근거규정인 조례 제23조제3항 역시 [별표3]의 사용료 산정기준 내용과 서로 맞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어 다음 [표 3]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표 3] 안 별표3의 사용료 산정기준과 안 제23조제3항에 대한 수정안

개정안	수정안
[별표 3]	[별표 3]
□ 사용료 산정기준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 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	수질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
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의	되는 폐수의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같은 법 제32조제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의 배출
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허용기준농도 또는 같은 법 제32조제8
대하여 산정한다.	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와의 차이
	에 대하여 산정한다.
○ (생략)	○ (개정안과 같음)
│ │ ○ 페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 <u>「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u>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에 의하여	관한 법률」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제23조(사용료)

- ①~② (생략)
- ③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 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별표 2에 의 한 하수도 사용요금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 다.

제23조(사용료)

- ①~② (생략)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2에 의한 하수도 사용요금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 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초과
- 3. 하수도법 제15조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를 통해 공고한 설계유입수질 초과
- 2) 음폐수, 침출수 등의 오염부하량 산정방식 신설 관련 (안 별표 3)
 - 서울시는 현재 쓰레기 및 페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페수 및 침출수 등을 물재생센터 내로 반입하여 처리([표 4] 참 조)하고 있는데.

[표 4] 음폐수, 침출수 반입 현황(2014년)

구	분	반입량 (㎡/년)	부과금액 (백만원)	징수금액 (백만원)	비고(반입업체)
	소 계	342,600	7,264	7,264	
음	중 랑	101,300	3,719	3,719	3개구(직영)
음 폐 수	난 지	193,400	2,070	2,070	2개구(2개소), 고양시(3개소)
	서 남	47,900	1,475	1,475	15개구(25개소)
-1	소 계	525,600	34	34	
침 출 수	난 지	466,500	9	9	난지도매립지 침출수
-7	서 남	59,100	25	25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 수질하수도사용료 부과를 위한 오염부하량 산정기준이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시 자체기준¹¹⁾으로 산정해 오던 것을 본 개정안을 통해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사용료 징수가 법적인 명확한 산정근거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음.
- 한편, 수질하수도사용료 부과 대상에 총질소(T-N)와 총인(T-P) 이 추가됨에 따라 음폐수·침출수 등의 처리비가 다소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시 세입은 2014년도 기준으로 음폐 수 약 4억7천만원, 침출수 약 4억3천만원 등 전체 9억원 정도 의 증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표5] 참조)

[표 5] 조례개정에 따른 처리비 예상증가내역

	구 분	연간 반입량 (㎡/년)	`14년 기준 (백만원)	조례개정시 (백만원)	증가액 (백만원)
	합 계	360,000	7,719	8,189	470
	중 랑	110,000	4,038	4,161	123
음 폐	난 지	200,000	2,141	2,406	265
수	서 남	50,000	1,540	1,622	82
	※ 음폐수 반입 자치구 16개소 평균 부담 29백만원/년(470백만원÷16개구) 증가하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단가(2013년 10만7천원)에 약 1900원/톤(1.7%) 인상요인 발생				
	합 계	519,000	34	464	430
	난 지 (난지도 매립지)	460,000	9	59	50
침 출 수	점			380	
,	※ 조례 개정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부담은 380백만원/년 증가하며 이는 수도권 3개시도(서울, 경기, 인천) 하수슬러지 반입료 인상에 반영 - 하수슬러지 단가(2015년 67,732원/톤)에 900원/톤(1.3%) 인상요인 발생				

¹¹⁾ 음폐수 및 침출수의 반입농도와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서울시가 공고(서울시특별시공고 제2014-818호, 2014.05.08.)한 설계유입수질 농도와의 차이로 산정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현행(별표3)의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은 내용이 모호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근거규정인 제23조제3항 역시 사용료 산정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사용료 산정기준' 및 '수질하수도 사용료 부과 근거규정'을 수정함.

-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관련 번호 540 제 안 일 자 : 2015년 6월 23일

제 안 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개정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개선되어 총질소 및 총인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 시 적용하는 항목에 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과 연관성을 갖는 현행[별표3]의 산정기준이 모호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근거규정인 제23조제 3항 역시 사용료 산정기준과 서로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사용료 산정기준' 및 '수질하수도사용료 부과 근거규정'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수질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산정 기준을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폐수의 농도와 상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농도 또는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 도와의 차이로 수정함. (안 별표3)
- 수질하수도사용료 징수근거를 명문화함. (안 제23조제3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안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2에 의한 하수도 사용요금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의 배출허용 기준 초과
-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 허용기준 초과
- 3. 하수도법 제15조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를 통해 공고한 설계유입수질 초과

〈별표 3〉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 대상항목 :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 농도(SS), 총질소(T-N), 총인(T-P)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폐수의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농도 또는 같은 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와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부유물질농도(SS), 총질소 (T-N), 총인
 (T-P)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페수배출량(m³/시간)] × 1 1000 (kg/g) × 1일 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 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 kg단가(원/kg)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5항 별표14의 단위금액을 준용
- ※ 법령에 의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반입이 가능한 음폐수, 침출수 등의 오염부하량은 반입농도와 법 제15조에 따라 공고한 공공하수처리시 설의 설계유입수질과의 차이로 산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3)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 기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3]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 기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3)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 기준
□ 대상항목 : 생물학적산소요 구량(BOD)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SS (부유물질 농도)	□ 대상항목 : 생물학적산소요 구량(BOD)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u>부유</u> 물질농도(SS), 총질소 (T-N), 총인(T-P)	
□ 사용료 산정기준 O 수질하수도 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제32조제 1항의 배출허용기준 농도 와 같은 법 제32조제8항 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 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 한다.	□ 사용료 산정기준○ (현행과 같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공 공하수도로 배출되는 폐 수의 농도와「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제32조제1항의 배 출허용기준농도 또는 같 은 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 와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 한다.
○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 D)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 량(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부유물 질농도(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현행과 같음)	○ (개정안과 같음)
○ 페수배출량은 <u>「수질 및 수</u>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2에 따 라 의하여 설치된 수질측 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현행과 같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 [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폐수배출량(m³/시간)]×1/1000(kg/g)×1일조업시간(시간/일)×30일×kg단가(원/kg)	□ 수질하수도사용료 ○ (현행과 같음)	□ 수질하수도사용료 ○ (개정안과 같음)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 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 균치를 적용한다.	○ (현행과 같음)	○ (개정안과 같음)
※ kg단가(원/kg)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5항 별표14의 단위금액을 준 용	○ (현행과 같음)	○ (개정안과 같음)
<u>《신 설》</u>	※ 법령에 의해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반입이 가능한 음 폐수, 침출수 등의 오염부 하량은 반입농도와 법 제1 5조에 따라 공고한 공공하 수처리시설의 설계유입수 질과의 차이로 산정한다.	○ (개정안과 같음)
제23조(사용료)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 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 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 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 의 경우 별표 2에 의한 하	제23조(사용료)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용료) ①~② (생략)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2에 의한 하수도 사용요금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수도 사용요금 외에 별표 3 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 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 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2.「수질 및 수생태계 보 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 준 초과
				3. 하수도법 제15조의 공 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를 통해 공고한 설계유입 수질 초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2에 의한 하수도 사용요금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의 배출허용 기준 초과
-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 허용기준 초과
- 3. 하수도법 제15조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를 통해 공고한 설계유입수질 초과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 대상항목 :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 농도(SS), 총질소(T-N), 총인(T-P)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폐수의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농도 또는 같은 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와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부유물질농도(SS), 총질소 (T-N), 총인
 (T-P)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페수배출량(m³/시간)] × 1 1000 (kg/g) × 1일 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 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 kg단가(원/kg)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5항 별표14의 단위금액을 준용
- ※ 법령에 의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반입이 가능한 음폐수, 침출수 등의 오염부하량은 반입농도와 법 제15조에 따라 공고한 공공하수처리시 설의 설계유입수질과의 차이로 산정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3]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별표 3)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 대상항목 : 생물학적산소요구량(B OD) 또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 D), SS(부유물질 농도)	 □ 대상항목 : 생물학적산소요구량(B ○D) 또는 화학적산소요구량(C○ D), 부유물질농도(SS), 총질소 (T-N), 총인(T-P)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 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 2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같은 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폐수의 농도와「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농도 또는 같은 법 제32조제8항의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와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부유물질 농도(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현행과 같음)
○ 폐수배출량은 <u>「수질 및 수생태계</u>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의2에 따라 의하여 설치된 수질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u>「수질 및 수생태계</u> 보전에 관한 법률」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 하량 [수질초과농도(mg/L)]×시 간당폐수배출량(m³/시간)]×1/10 00(kg/g)×1일조업시간(시간/일) ×30일 ×kg단가(원/kg)	□ 수질하수도사용료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전 배출시 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 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현행과 같음)
※ kg단가(원/kg)는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5조5항 별표14의 단위금액을 준 용	○ (현행과 같음)
<u>《신 설》</u>	※ 법령에 의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반입이 가능한 음폐수, 침출수 등 의 오염부하량은 반입농도와 법 제15조에 따라 공고한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설계유입수질과의 차 이로 산정한다.
제23조(사용료)	제23조(사용료)
①~② (생략)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 2
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에 의한 하수도 사용요금 외에 별표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기억이 거 이번도 이에 이하 되스트	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
지역의 경우 별표 2에 의한 하수도 사용요금 외에 별표 3에 의한 수질 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로 징수할 수 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 허용기준 초과
	3. 하수도법 제15조의 공공하수처 리시설 사용개시를 통해 공고한 설 계유입수질 초과